

저작권법의 탄생*

로렌스 레식

김도현 옮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것은 1595년이였다. 1597년 초연된 이 연극은 셰익스피어의 11번째 주요작품이었다. 그는 1613년까지 활동을 계속했으며 그 업적은 이후 영미권 문화의 초석이 되었다. 이 16세기 작가의 영향력은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이 침윤되어 있어 때로 우리는 그 연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헨리 5세를 각색한 케네스 브래너의 작품을 보고 “이 작품 좋군. 셰익스피어는 정말 따분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1774년, 로미오와 줄리엣이 쓰여진지 거의 180년이 지났음에도, 이 작품의 “복제-권 copy-right”은 여전히 제이콥 톰슨¹이라는 런던의 한 출판사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톰슨은 18세기 영국에서 서적판매를 장악했던 콘저Conger²라 불리는 출판사 조합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존재였다. 콘저는 저자에게서 사들인 책에 대하여 자신들이 영구적인 “복제” 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어느 누구도 복제-권이 있는 책의 복제물을 출판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고전의 가격은 높게 매겨졌고 질 좋고 값싼 판본을 생산하는 경쟁은 존재할 수 없었다.

1774년경, 저작권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의문을 가질 법한 사건이 일어났다. 물론 저작권 역사에서는 1710년, 영국의회가 최초로 “저작권법”을 통과시킨 해가 더 유명하다. 앤여왕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은 모든 출판물에 14년의 저작권 존속기간을 부여하고 저자가 생존하는 경우 1회 갱신할 수 있으며 1710년 기준으로 이미 출판된 저작물은 21년간만 존속한다고 규정하였다.³ 따라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1731년이면 자유롭게 되어야 했다. 그런데 어째서 1774년에도 여전히 톰슨의 배타적인 권리 하에 있다고 여겨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때까지 영국인들이 “복제-권”이 무엇인지 합의를 못보고 있었던 데 기인한다. 사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앤여왕법이 통과될 당시, 저작권을 규율하는 다른 입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출판업을 규율했던 최근 입법은 1662년의 출판허가법이었으나, 이 법은 1695년에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 이는 무엇

*LAWRENCE LESSIG, *Free Culture: How Big Media Uses Technology and the Law to Lock Down Culture and Control Creativity*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04), 제6장 “Founders”를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구·교육용으로만 이용되기를 희망한다.

이 출판될지를 국왕이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출판에 대한 독점권을 출판사에 부여한 법률이었다. 이 법의 효력이 만료되자 이제 출판사, 혹은 “인쇄출판업자Stationers”의 배타적 권리를 규정한 실정법은 더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실정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미법 전통에서 행위규칙을 알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연표뿐만 아니라 법원의 연표도 살펴야 한다. 입법부의 연표를 “실정법”이라 부르고, 법원의 연표를 “보통법”이라 부른다. 보통법은 입법부 입법의 배경을 이룬다. 입법부가 이 배경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교체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출판허가법의 만료 이후 실제 문제되는 것은 실정법이 없어도 보통법에 의해서 저작권이 보호되는지 여부였다.

흔히 “서적상booksellers”이라 불리던 출판업자들에게 이 문제는 심각하였다. 당시 외국 출판사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스코틀랜드인들의 서적 발행과 잉글랜드로의 수출이 증가일로에 있었다. 이러한 경쟁으로 콘저의 이윤은 감소되었고, 이들은 출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또다시 의회에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앤여왕법이었다.

앤여왕법은 책의 저자 또는 “독점권자proprietor”에게 책을 출판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적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중대한 제한이 있었다. 법은 서적상들에게 한정된 기간동안만 권리를 부여했던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은 “만료”되고 저작물은 자유롭게 되어 누구나 출판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 적어도 입법부는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왜 의회는 이렇게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였을까? 권리의 특수한 행사방법에 제한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왜 권리 자체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했을까?

서적상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 대변되는 저술가들의 논리는 매우 강력했다. 로미오의 줄리엣을 예로 들어보자. 이 연극은 셰익스피어에 의해 씌어졌다. 그의 천재성으로 인하여 이 작품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는 작품을 쓰면서 타인의 재산을 도용하지 않았으며(이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장이나 지금은 다투지 말기로 하자), 그의 작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작품활동이 곤란해진 바도 없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그나 그 상속인의 허락없이 타인이 도용하도록 법이 허용할 이유가 어디에 있던 말인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훔치도록” 내버려둘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앤여왕법 시행 당시의 “저작권” 관념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둘째, “서적상”들에게도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우선 저작권부터 살펴보자. 지난 300년간 저작권의 적용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왔지만, 1710년 당시의 그것은 대단히 특수한 권리에 지나지 않았다. 서적을 타인이 재출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수한 제한만을 가진 채 저작권은 탄생하였다. 1710년 당시 “복제-권”은 특수한 서적을 특수한 기계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였다. 이러한 한정된 범위 이외의 행위는 저작권의 관할사항이 아니었다. 저작물의 일반적 사용은

규제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저작권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의미한다. 오늘날 저작권자는 배타적 복제권, 배타적 배포권, 배타적 공연권 등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셰익스피어의 저작권이 영구적인 것이었다 해도, 그 원초적 의미는 셰익스피어 상속인의 허락 없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재출판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밖의 행위, 이를테면 작품의 공연, 작품의 번역, 케네스 브래너에 의한 작품의 영화 제작 등은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복제-권”은 출판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불과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러한 제한된 권리조차 영국의회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의회는 “배타적 권리,” 특히 국왕이 수여한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좋지 않은 경험을 오랫동안 겪어 왔다. 영국 내전은 국왕의 독점권 수여—특히 기성 작품에 대한 독점권 수여—에 대한 영국인들의 투쟁이기도 했다. 헨리 8세는 성경 출판에 특허권을 부여했었고, 다시 Darcy에게는 트럼프 인쇄의 독점권을 수여한바 있었다. 영국의회는 이러한 국왕의 권력에 맞서 싸웠다. 1656년 의회는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제한한 독점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1710년경, 의회는 당시 심화되고 있던 출판 독점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 했던 것이다.

“복제-권”은 독점권이었고, 따라서 제한받아 마땅한 권리였다. (“이것은 나의 재산이니 영구히 나의 소유여야 한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다면, “이것은 나의 독점이니 영구히 나의 소유여야 한다”는 말로 바꾸어 읽어보라.) 국가는 배타적 권리를 보호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에 유익할 동안만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영국인들은 특수 이익에 기인하는 해악을 알아차렸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둘째, 서적상에 대해 살펴보자. 저작권은 단순한 독점권이 아니라, 서적상들의 독점권이였다. 현대 우리들에게는 서적상이라는 표현이 우아하고도 무해하게 들린다. 그러나 17세기 영국에서 그들은 무해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다. 콘저 조합원들은 가장 나쁜 종류의 독점주의자로 생각되었다. 독점이윤을 위해 영국의 자유를 팔아먹는 자들, 그들은 국왕의 압제의 도구였다. 이들 독점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은 단호했다. 밀튼에게 그들은 “서적 거래에서의 낡은 특허권자요, 독점권자”였고, “배울 바 전혀 없는, 부정직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었다.⁴

많은 이들이 지식의 확산을 저지하는 이들의 권력을 유해하다고 보았다. 당시 계몽주의는 교육의 중요성, 지식 확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었다. 지식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관념은 당시의 시대사조였는데, 이들 강력한 상업적 이익집단이 이 관념을 유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의회는 서적상들간의 경쟁을 강화하려 했고,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치로운 서적의 양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의회는 저작권 존속기간에 한계를 두어, 존속기간이 끝나면 누구라도 가치로운 책을 자유로이 출판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기성 저작물에 대해 21년의 존속기간을 둔 것은 서적상들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존속기간의 한계는 출판사간의 경쟁을

보장하여 문화의 건설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1731년(1710년 + 21년)이 다가오자 서적상들은 좌불안석이었다. 그들은 경쟁 심화의 결과를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사업자들처럼 경쟁을 좋아하지 않았다. 애초 서적상들은 앤여왕법을 무시하고 출판에 대한 영구적인 권리를 계속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735년과 1737년에는 의회를 설득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려 시도했다. 21년으로는 충분치 않고 더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한 팜플렛에는 오늘날의 사태를 예감하는 듯한 구절이 쓰여있다.

존속기간 연장을 부여할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일회의 연장은 옛 권리가 만료될 때마다 또다시 연장이 부여되는 상황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법의 이름으로 용납해서는 아니될 사실상의 영구 독점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거래의 경색과 학습의 단념과 저자의 무익과 공중에 대한 세금을 야기할 것인바, 이 모든 것은 서적상의 사익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따름이다.⁵

의회에 대한 시도가 실패하자 출판업자들은 일련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들의 변론은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것이었다: 앤여왕법이라는 실정법은 저자들에게 일정한 보호를 주었지만, 그 보호는 보통법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앤여왕법은 단지 보통법을 보충하려는 의도만 가진다. 보통법하에서는 타인의 창조적 “재산”을 허락없이 가져가 이용하는 것은 언제나 불법이었다. 서적상들은 앤여왕법이 이것을 바꾸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앤여왕법의 보호가 만료된다고 해서 보통법의 보호까지 만료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앤여왕법상의 저작권이 만료하더라도 보통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서적의 출판을 여전히 금지할 수 있다. 그들은 이것이 저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발한 논증이었고, 적어도 당대 최고의 법률가 중 몇 명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후안무치를 드러내는 주장이기도 했다. 법학교수 레이먼드 패터슨이 밝히고 있듯이, 당시 “출판업자들은 목장주인이 소를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저자를 대하고 있었다.”⁶ 서적상들은 저자의 권리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 그들의 관심은 저자의 작품이 가져다주는 독점이윤에만 놓여 있었다.

투쟁이 없었다면 서적상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른다. 이 투쟁의 주인공은 알렉산더 도날드슨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서적상이었다.⁷

도날드슨은 런던 콘저의 아웃사이더였다. 그는 1750년 에딘버러에서 출판업을 시작했다. 사업의 초점은 주로 앤여왕법에 의해 “존속기간이 만료된 표준적인 저작물”을 싼값에 재발행하는 것이었다.⁸ 도날드슨의 출판사는 번창했고 “학식있는 스코틀랜드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마크 로즈 교수에 따르면, “청년시절 제임스 보스웰은 그의 친구 앤드류 어스킨과 함께 당대 스코틀랜드 시선집을 도날드슨 출판사에서 출판하기도 했다.”⁹

런던 서적상들이 도날드슨의 스코틀랜드 소재 출판사를 폐쇄하려 하자 그는 출판사를 런던으로 이전하였고 인기를 누리던 영국 서적의 보급판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는 소위 문학적 재산에 대한 보통법상의 권리를 겨냥한 항의의 표현이었다.¹⁰ 그의 서적은 콘저의 책값을 30% 내지 50% 떨어뜨렸다. 그는 앤여왕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의 판매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런던 서적상들은 도날드슨과 같은 “해적행위”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했다. “해적”들을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에서 이들은 승소하였는데, 그중에서 *Millar v. Taylor* 사건은 초기의 가장 중요한 성공작이었다.

서적상 밀러는 1729년 제임스 톰슨의 시 “계절”에 대한 권리를 사들였다. 밀러는 앤여왕법의 요건을 충실히 따랐으므로 법률상의 보호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보호기간이 만료하자 로버트 테일러가 경쟁 판본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밀러는 앤여왕법상의 권리 소멸에도 불구하고 보통법상의 영구적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¹¹

현대 법률가에게는 놀랍게도, 영국법사에서 가장 위대한 법관 중 한 명인 맨스필드 경이 서적상들의 견해에 동조했다. 앤여왕법이 서적상들에게 어떤 보호를 주었든, 동법은 보통법상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아니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문제는 보통법이 “해적”들로부터 저자를 보호해 주느냐인데 맨스필드는 이를 긍정하여, 보통법에 따르면 밀러의 허락없이 테일러가 톰슨의 시를 출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보통법은, 양도받은 책의 출판을 통제할 수 있는 영구적인 권리를 서적상들에게 부여한 셈이 되었다.

추상적 정의—정의를 제1원리로부터의 논리적 추론의 문제라고 보는 논증방식—의 관점에서 볼 때, 맨스필드의 결론은 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1710년도에 의회가 왜 그런 입법을 했는지에 관한 보다 큰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출판업자의 독점권력을 제한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었는가? 의회의 전략은, 1710년 당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긴 기간이면서 동시에 문화영역에서 경쟁이 꽃필 수 있는 충분히 짧은 합리적인 기간을 기성 저작물에 부여하는 것이었다. 21년의 기간이면, 영국은 국왕이 수여한 통제적 문화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상속받은 자유로운 문화로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회는 판단했던 것이다.

앤여왕법의 취지를 보존하려는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도날드슨은 무대의 전면에 등장한다.

소송에서 승리한 직후 밀러는 사망했고 상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상속인은 톰슨의 시를 토마스 베케트가 속한 출판업자 조합에 매도했다.¹² 그후 도날드슨은 톰슨의 저작을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출간했다. 베케트는 *Millar* 판결을 원용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얻어냈다. 도날드슨은 이 사건을 상원에 상소했다. 영국상원은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1774년 2월, 상원은 60여년 전 의회가 만들었던 규정의 의미의 해석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Donaldson v. Beckett* 사건은 영국 전역으로부터 지대

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 도날드슨의 변호사들은, 보통법상의 권리가 어떠한 간에 앤여왕법은 이 권리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앤여왕법이 제정된 후에는 출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은 앤여왕법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앤여왕법상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동법의 보호를 받던 저작물은 보호없는 상태에 놓인다고 주장하였다.

상원에서의 절차는 특이했다. 상원에 제기된 소송은 우선 “법률귀족law lords”의 투표에 부쳐졌다. 이들은 우리의 대법관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특별 재판부를 구성한다. 법률귀족들의 투표가 있고 나면 상원 총회에서 전체 상원의원들이 투표를 했다.

법률귀족의 투표 결과에 대하여 기록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영구적 저작권 쪽이 우세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원 전체의 표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2 대 1의 다수(22 대 11)로 영구적 저작권 주장은 배척되었다. 보통법이 어떠한, 이제 저작권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보호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저작물은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감이 확인되었다.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 *Donaldson v. Beckett* 사건 이전 영국에서는 공공의 영역에 대한 명확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1774년 이전에는 보통법상 저작권의 영구성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그러나 1774년 이후 마침내 공공의 영역이 탄생했다. 영미 역사상 최초로 저작물의 법적 통제가 만료하였고, 셰익스피어, 베이컨, 밀튼, 존슨, 버논의 작품을 비롯한 영국 역사의 위대한 작품들이 법적인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오늘날 우리들로서 당시 상원의 결정이 불러온 지대한 대중적·정치적 반향을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해적 출판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스코틀랜드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이 판결을 축하했다. 에딘버러 애드버타이저 기사에 따르면, “어떤 소송도 이렇게까지 대중의 관심을 모은 적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재판을 상원에서 받은 적이 없었다.” “에딘버러에는 문학재산권에 대한 승리의 환호가 넘치고 있다. 축제의 장식과 폭죽이 시내를 덮고 있다.”¹³

런던에서도, 적어도 출판업자들 사이에서는, 비록 반대방향이었지만 강력한 반향이 일어났다. 모닝 크로니클 지 기사이다.

이 결정으로... 200,000파운드에 달하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어제까지 재산권이라 여겨지던 금액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었다. 토지와 저택을 팔아 복제-권을 구입했던 런던과 웨스트민스터의 서적상들은 어떤 의미로는 파멸했고, 수년 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가족을 부양할 재산을 모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이제 자손에게 물려줄 단돈 1실링도 가지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¹⁴

“파멸”이라는 표현에는 과장이 섞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판결이 가져온 변화가 근본적이고 중대한 것이었다는 의미에서는 과장이 아니다. 상원의 결정은 서적상들이 영국 문화의 성장과 발전을 더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영국의 문화는

이제 “자유free”로워진 것이다. 이는 더이상 저작권이 존중받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저작물이 발간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 책의 출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서적상이 당연히 가지는 것이다. 또한 이는 남의 책을 훔칠 수 있게 되었다는 뜻도 아니다. 저작권이 만료한 후에도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책을 사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문화와 그것의 성장이 더이상 소수의 출판업자들에 의해 통제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다른 자유로운 시장이 그러하듯, 자유로운 문화의 자유시장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성장해 갈 수 있게 되었다. 영국 문화는 영국 독자들의 선택—어떤 책을 사고 어떤 책을 쓸 것인가의 선택, 어떤 문화적 유전자를 전승하고 옹호할 것인가의 선택—에 따라 발전해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경쟁에 의한in a competitive context” 선택이다. 어떤 문화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공할지를 다수의 소망과는 무관하게 소수가 좌우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선택이 아니다.

출판업자의 보호주의적 주장에 저항하는, 반독점주의적 의회가 있었던 세계의 법은 적어도 이랬다. 반면, 유순한 의회를 가진 세계에서는 자유로운 문화가 들어설 자리가 점차 축소되게 된다.

주석

1. 제이콥 톤슨은 존 드라이덴 등 18세기 저명한 문필가들과의 교류뿐 아니라, 그의 단아한 “확정본” 고전 판본들로도 유명하다. 로미오와 줄리엣 외에도 영어 교범의 중핵을 이루는 일련의 서적을 출판하였는데, 셰익스피어 전집, 벤 존슨 전집, 존 밀튼 전집, 존 드라이덴 전집이 대표적이다. Keith Walker, “Jacob Tonson, Bookseller,” *American Scholar* 61:3 (1992): 424–31을 볼 것.
2. Lyman Ray Patterson, *Copyright in Historical Perspective*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68), 151–52.
3. Siva Vaidhyanathan이 훌륭히 밝히고 있듯이, 이것을 “저작권법”이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Vaidhyanathan, *Copyrights and Copywrongs*, 40을 볼 것.
4. Philip Wittenberg, *The Protection and Marketing of Literary Property* (New York: J. Messner, Inc., 1937), 31.
5. A Letter to a Member of Parliament concerning the Bill now depending in the House of Commons, for making more effectual an Act in the Eighth Year of the Reign of Queen Anne, entitled, An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by Vesting the Copies of Printed Books in the Authors or Purchasers of such Copies, during the Times therein mentioned (London, 1735), in Brief Amici Curiae of Tyler T. Ochoa et al., 8, *Eldred v. Ashcroft*, 537 U.S. 186 (2003) (No. 01-618)
6. Lyman Ray Patterson, “Free Speech, Copyright, and Fair Use,” *Vanderbilt Law Review*, 40 (1987): 28. 훌륭한 해설로서 Vaidhyanathan, 37–48 볼 것.
7. David Saunders, *Authorship and Copyright* (London: Routledge, 1992), 62–69의 훌륭한 해설을 볼 것.
8. Mark Rose, *Authors and Owner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92.
9. 윗글, 93.
10. Lyman Ray Patterson, *Copyright in Historical Perspective*, 167 (Borwell 인용).

11. Howard B. Abrams, "The Historic Foundation of American Copyright Law: Exploding the Myth of Common Law Copyright," *Wayne Law Review* 29 (1983): 1152.
12. 윗글, 1156.
13. Rose, 97.
14. 윗글.